

## 요약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소수문화 보호·공존문화 육성·정책기반 구축

## 문화다양성, 세계화 열풍에 따른 문화 종속화 우려로 탄생한 개념

문화다양성이란 각 집단의 문화가 고루 반영돼 사회의 문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곧 문화구성에 있어 다양한 집단성과 계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 집단의 문화가 왜곡됨이 없이 드러나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화의 주체성과 주권성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현실로 등장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화의 바람 때문이다. 세계화의 열풍으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상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하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중시한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을 발표하였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Diversity)을 도출하는 한편,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이끌어냈다. 문화다양성을 하나의 국제협약으로 도출한 것이다.

## 한국,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이슈 뜨면서 문화다양성 재부각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진행된 한미 FTA부터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장치였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축소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 스크린 쿼터제 또한 줄어든 상영일수로 인해 예술영화보다는 상업영화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화다양성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 것은 다문화 이슈가 부상하면서부터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은 다문화를 이해하는 중심언어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가 국외로부터 오는 상업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내부에 형성되는 ‘타자성’에 대한 논의로 문화다양성을 이슈화한 것이다. 이어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중심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체계 못 갖춰...서울시도 조례만 제정한 상태

---

그러나 아직 문화다양성 정책은 핵심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만 하고 몇 개의 사업, 예컨대 무지개다리사업이나 문화다양성의 날과 같은 이벤트 사업만 추진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책들을 갖추고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특별한 정책이 없던 서울시는 2017년 5월 18일 시의원 발의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정책에 대한 준비 없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 서울시 조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내포해 개정이 불가피

---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문화다양성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광역시 조례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항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조례 제2조다. 조례 제2조는 문화다양성을 ‘문화적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문화적 관용’의 범위를 ‘미풍양속 내로 제한한다’고 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위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자문진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설계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과 '제정된 조례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전문가들 “조례는 정의, 보호·증진, 위원회 구성 등의 순으로 문제”

델파이 조사는 총 5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56명의 대상자 중 1차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46명(85.1%)이었고, 2차 조사에는 1차에서 응답한 46명 중 43명(93.5%)이 참여했다.

우선,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해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답한 가운데, 제2조 ‘정의’와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등의 순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중 ‘문화적 관용’으로 대체되어 있는 제2조 ‘정의’ 조항은 전면 개정해 문화다양성을 실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타인(사회구성원 간)에 대한 존중’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련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해선 ‘소수자의 권익보호’, ‘자기표현권 보호’,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융합 도모’, ‘예술창작과 생산·보급·향유 권리 보호’ 등의 순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 대상은 ‘장애’, ‘민족인종국가’, ‘성성적지향’, ‘나이’, ‘지역’, ‘종교·사상’, ‘비주류문화’ 순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어 각 집단별로 정책방향을 물었는데, ‘장애’, ‘민족인종국가’, ‘종교·사상’의 영역에선 ‘소수 문화접촉 기회 확대’가, ‘나이’에서는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이, ‘성성적지향’에선 ‘시정 내 다양성 보호·증진 반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어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물은 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가장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그다음은 ‘시민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과 ‘조례개정’ 등의 순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문화다양성 정책비전은 ‘차이 차별않고 다름 존중 문화시민도시 서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설계했다. ‘차이에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았고, 목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문화시민도시’,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시민문화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민족인종국가’, ‘장애’, ‘성성적지향’, ‘종교사상’, ‘나이’, ‘지역’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소수문화의 보호·육성’과 ‘공존의 시민문화 육성’, ‘정책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계했다. 이 각각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과제를 설계하였고,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당사자의 참여’, ‘시민의견 수렴’, ‘상호존중과 차이인정’ 등을 설정했다. 각 정책방향에 따라 제시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문화의 보호·육성은 △문화적 차별과 혐오의 금지, △소수문화의 보호·육성기반 확충,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 육성 등으로 과제를 설정했다. 각 집단이 차별받지 않고 자기(표현권)를 보호받으며, 해당 분야의 예술가나 활동가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표현권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정책방향의 취지다.

둘째,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은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이해촉진을 위한 접촉면 강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으며 여러 문화와 접촉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고, 도시정부로서 서울시 특징을 살려 다양한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제고해보자는 것이 과제의 제안 배경이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구축은 △조례 개정,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지금은 정책 출발단계...직접적인 사업보다 정책추진 기반 다질 필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서울시는 아직 본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본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소수자 보호나 관련 예술가 육성보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추진 기반을 갖추는 한편, 시민대상의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